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속집행 제고를 위한 '선금의 부채 제외' 특례 통보

1. 항상 지방계약 관련 업무수행과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의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의 등급별 평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선금이 부채에 포함되어 낙찰자 결정의 경영상태 평가 시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어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 시 선금수령 기피로 신속집행 저조의 원인이 되고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비율) 시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하는 한시적 특례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신속집행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21.6월 말까지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나.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다.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라.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마. 적용일 : 5.15.(금)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4. 아울러, 동 내용을 시·도 및 교육청에서는 시·군·구, 교육지원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예산담당관), 부산광역시(재정혁신담당관), 대구광역시(예산담당관), 인천광역시(예산담당관), 광주광역시(예산담당관), 대전광역시(예산담당관), 울산광역시(예산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예산담당관), 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 강원도지사(예산과장), 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 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 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 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부산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대구광역시교육감(회계정보과장), 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광주광역시교육감(재정복지과장), 대전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울산광역시교육청(재정복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운영지원과장), 경기도교육감(재무담당관), 강원도교육감(행정과장), 충청북도교육감(재무과장), 충청남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북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남도교육감(재정과장), 경상북도교육감(재무정보과장), 경상남도교육감(재정복지과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재정과장), 조달청장(전자조달기획과장), 조달청장(전자조달관리과장)

주무관 윤채원 행정사무관 최교신 회계제도과장 전결 2020.5.6.  
김경태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2094 접수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608호

전화번호 044-205-3784 팩스번호 044-205-3527 / chaewon79@mail.go.kr / 대국민 공개